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

보험금 · 신탁 재산 · 퇴직금 등도 상속 재산으로 신고해야

상속세 과세 대상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,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 연금, 신탁 재산 등 간주 상속 재산이 포함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. 따라서 간주 상속 재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종종 있다.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간주 상속 재산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세테크의 기본 자세다. 글 이호(화인경영회계법인 회계사) 에디터 김혜영 사진 〈NOBLE ASSET〉

김 씨는 최근 상속세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. 아버지 명의로 된 10억 원짜리 아파트와 5000만 원 정도의 예금 등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했다. 그런데도 간주 상속 재산 신고 누락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. 김 씨는 부동산, 예금과 같은 재산 외에 간주 상속 재산, 추정 상속 재산 등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다고 한다. 그렇다면 김 씨가 미처 신고하지 못한 간주 상속 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.

보험금

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 또는 손해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일 때 지급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. 그러나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 계약자로 간주해 이를 상속 재산에 포함한다.
상속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.

※ 보험금=보험금 수령액×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/사망 시까지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

신탁 재산

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된다. 다만, 신탁 이익에 대한 권리를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 재산에서 제외한다. 금전, 유가증권, 금전채권, 동산, 부동산 등에 신탁을 설정해 지급받은 수익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.
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해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 재산에 포함한다. 이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 재산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부를 상속 재산으로 본다.

퇴직금

퇴직금 · 퇴직수당 · 공로금 · 연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. 단, 국민연금법 · 공무원연금법 · 사립학교직원연금법 · 군인연금법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· 별정 우체국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·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.

처분 재산

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재산 종류별(① 현금 · 예금 및 유가 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 기타 재산)로 구분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(2년 이내 5억 원 이상)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. 단,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이 1년 이내 2억 원(2년 이내 5억 원)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.

채무 부담

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합계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(2년 이내 5억 원 이상)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. 처분 재산 및 채무 부담의 경우, 사용한 곳을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한 재산 가액의 20% 또는 2억 원 중 적은 것을 차감해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. 그러므로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 또는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(2년 이내 5억 원 이상)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둬야 한다. 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10~40%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, 미납부 시에는 1일 0.03%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보험금, 퇴직금 등 간주 상속 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.